

서 면 질 문 서

질문의원	허 명 도 의원 	
소관부서	질 문 내 용	비 고
사회복지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복지법인 선영어린이집 노인건강센타설립과 관련하여 부산시의 의견조회에 따른 구관련부서 의견취합내용(3회) 및 부산시에 종합의견회사(2회)내용 	

서면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

질문의원명	허명도 의원	질문일시	2001. 5. 21
답변부서	사회복지과		
질문내용	복지법인 선영어린이집 노인건강센타 설립과 관련하여 부산시의 의견조회에 따른 구관련부서 의견취합내용(3회) 및 부산시에 종합 의견회시(2회)내용		

다음은 허명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법인 선영어린이집 노인건강센타 설립과 관련한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.

- 선영어린이집 노인건강센타 설립과 관련한 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1차신청 접수(2001.3.30)건은 부산시에 진달하였으나, 정관변경인가 신청관련 다음과 같은 보완사항을 통보받았습니다.
 ※ 정관변경의 필요성 및 타당성, 추가목적사업 시설부지의 입지적여건 및 시설건축가능 여부, 귀구의 검토의견등
- 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2차신청 접수(2001. 4. 17)건에 대하여 구해당부서 의견회신 사항 등을 토대로 65세이상 무의탁 및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전문 요양시설의 설치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부산시에 진달하였습니다.
 ◆ 부산시의 처리결과는 사회복지법인 선영어린이집 목적사업(노인전문요양 시설)을 위한 정관변경인가신청은 시설부지의 개발행위 허가가 불가하고 시설설치에 따른 재원확보 여부가 불확실하여 불가처리하였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.
- 복지법인 사업계획변경신청 접수(2001.4.25)건은 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구해당부서 의견사항을 부산시에 진달하였으나, 부산시로부터 처리결과에 대한 회신은 없었습니다.
-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구 관련부서 의견취합 내용(3회)에 대한 서류제출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요구할수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